

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4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 안 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- 나. 폐지사유
 -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고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-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한)

- 본 조례 폐지안은 호적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
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
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8>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사유

호적법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부과징수함으로 조례 폐지

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(안)

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